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6일, 윤준병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의원)

현행법은 장애인·한센인, 어린이집 및 유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회적기업과 국가유공자, 무주택자 및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의료와 보훈, 주택공급 등의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 및 의료·보훈·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17조제1항)

개정안은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²⁾.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자동차세와 취득세 납부 부담 없이 차량을 보유·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³⁾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255억원(연평균 1,2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2)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238면, 삼일인포마인, 2022

3)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연장(안 제17조의2제1항)

개정안은 한센인 농원 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축사용 부동산,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에서 헌인마을, 구평마을, 부평마을 등 86개의 장소를 정하고 있음.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81개 정착마을에 한센사업대상자 2,021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한센사업대상자의 7,644명⁴⁾의 26.4% 수준임.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사업대상자의 평균연령은 81.4세이고, 80세 이상이 55.7%를 차지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제1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에서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집단으로 정착하고 생활하면서 거주와 관련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4) 한센사업대상자(7,644명)는 한센병환자(요치료자) 3,946명과 한센서비스대상자(치료종결자) 3,698로 구성됨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57.5억원(연평균 1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3)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19조)

개정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및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의 일몰기간 연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영유아 보육을 위한 인프라 유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향후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취득 및 소유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206억원(연평균 441.2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4)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22조제8항)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100분의 40) 경감 및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100분의 60)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2023년 말 기준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은 68개 기관이 있고, 약 1만 1천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 연간 입원환자는 9만 6천명, 외래환자는 73만 6천명이 진료를 받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 보건을 증진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해당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⁵⁾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율을 10%포인트씩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현재 기준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 중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⁶⁾된 의료기관은 없음.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30%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만을 연장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는 국립대학병원, 보훈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은 취득세 감면율이 50%이고, 지방의료원은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 6) 참고로, 정부는 5대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1개소씩 지정하고 있음

권역	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수도권
의료기관명	조선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지정일자	2017. 8. 21.	2020. 7. 31.	2020. 7. 31.	2021. 7. 26.	2022. 4. 13.

자료: 황민화, 김환희, 박지영(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의료대응지원과), “2023년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 소개), 정책보고Public Health Weekly Report Vol17, No 34, 2024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차이가 있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취득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50%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만을 연장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산세 감면을 받는 지방의료원은 재산세 감면율이 75%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세 감면율이 25% 등으로 차이가 있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경영을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총 5년간 총 7.0억원(연평균 1.4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5)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개정안 제22조의2)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최근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 및 이에 따른 인구절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 지원 및 다자녀 양육자의 양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재산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248억원(연평균 2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6)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29조제4항)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 등에는 ① 국가유공자⁷⁾, ② 보훈대상자⁸⁾, ③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⁹⁾, ④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함.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의 성격을 가짐.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삭제함으로써 부상을 입고 법률에서 정하는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보유하는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가 있음.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1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이 있음.

9)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을 의미함.

출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예우보상 > 보훈대상 > 지원대상자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9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598억원(연평균 32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7)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30조제2항제1호)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경감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제1호).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의학적·정신적 재활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¹⁰⁾, 전공상군경 등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참전군인 등에 대한 감면진료,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장구 제작, 공급 및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¹¹⁾.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제7조(보훈병원) 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11) 중앙보훈병원 2023년 연보의 “개요 및 현황” 중 “가. 개황” 부분
보훈병원 연보 자료 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목록> 병원 연보 (https://www.bohun.or.kr/030manage/manage0206_04.php)

보훈병원에는 중앙보훈병원(서울 강동구에 위치),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이 있음.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8.5억원(연평균 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8)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연장(개정안 제33조제2항)

개정안은 상시 거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서민주택의 요건을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음¹²⁾.

통계청이 2023년 11월 14일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일반가구 2,177.4만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23.2만 가구로 전년대비 1.4% 증가했고, 무주택 가구는 954.1만 가구로 조사됨. 2015년 이후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소유율은 56% 수준인데, 일반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무주택가구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임.

개정안은 해당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또는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및 금액 이하의 서민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함.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서민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2.6억원(연평균 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9)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36조)

개정안은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는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를 의미하는데¹³⁾, 한국해비타트는 정부 재정지원 없이 모금 및 후원으로 비영리 주택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주택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3)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는 2010년 법인명을 ‘한국해비타트’로 변경하였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를 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에 따라 감면의 대상이 되는 무주택자에게 분양 목적으로 공급한 주택은 2019년 34세대, 2020년 28세대, 2021년 12세대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공급하지 않음.

2022년과 2023년에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의 주택은 없었는데, 한국해비타트에 따르면, 해당 기간은 사업의 준비기간으로 주택의 공급이 없었지만, 2025년과 2026년에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개정안을 통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을 계속 부여함으로써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을 위한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6.3억원(연평균 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10) 국립대병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37조제1항)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제1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제2호), 국립대학병원(제3호), 국립암센터(제4호), 국립중앙의료원(제5호), 국립대학치과병원(제6호), 한국원자력의학원(제7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개정안을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제1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제2호), 국립대학병원(제3호), 국립암센터(제4호), 국립중앙의료원(제5호), 국립대학치과병원(제6호), 한국원자력의학원(제7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립대학병원 등이 진료, 교육, 연구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증진 및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38조의2제1호)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의료원은 13개의 시·도에 총 35개소가 있고, 이 중 종합병원은 30개, 병원은 5개임. 지방의료원 35개소는 8~25개의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병상수는 9,914개이고, 응급 환자를 위한 병상수는 총 568개임.

지방의료원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 주민들을 진료하고, 응급환자를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안정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

우 지방세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총 12억원(연평균 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12)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40조제1항)

개정안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제1항¹⁴⁾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으로 13개 시·도에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며 건강검진, 예방접종, 일반진료(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를 실시하고,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성보호, 출산친화인식개선, 육아, 인구 연구 등을 수행함¹⁵⁾.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¹⁶⁾에 따라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 예방사업을 지원하며, 비전염성 만성질환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

14) 「모자보건법」 제16조(협회)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5)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https://www.ppfk.or.kr/>) 가족보건의원, 인구사업 항목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한국건강관리협회)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로 하는 질환의 조기 발견,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건강검진과 치료, 역학적 조사연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함¹⁷⁾.

대한결핵협회는 「결핵예방법」 제12조제1항¹⁸⁾에 따라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과 환자 발견, 군 검사, 환자 치료,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며 국내외 호흡기 감염병 퇴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대한결핵협회의 조직에는 본부 산하 결핵연구원, 글로벌 협력원, 12개 지부, 9개 복심자의원 등으로 구성됨¹⁹⁾.

개정안을 통해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동 협회들이 모자보건사업, 건강검진, 호흡기 환자 치료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0억원(연평균 1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17) 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 > 소개 > 설립목적

18) 「결핵예방법」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9)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 > 협회소개 > 핵심사업 https://knta.or.kr/about_us/business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